

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

[김보경 의원 대표발의]

의 번	안 호	1720
--------	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9. 6.

발의의원 : 김보경 의원, 서도원 의원,
구자학 의원

1. 제안이유

- 우리 군 읍·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, 재해·재난정보,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,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지원절차, 관리·운영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라. 관리·운영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의2

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읍·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, 재해·재난정보,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마을방송시스템”이란 달성군 읍·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, 재해·재난정보,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·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.
2. “마을”이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읍·면·리·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」 [별표3]에 따른 각 리 중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를 제외한 리를 말한다.
3. “관리·운영자”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·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)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1. 관공서,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
2. 재해·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
3.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
4. 그 밖에 읍·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

제4조(지원기준 등) ① 달성군수(이하 ‘군수’라 한다)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회(해당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의 성격을 갖는 한 주민총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, 이하

같다)가 지정한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신규 또는 교체 설치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
2. 마을회의 비용 등으로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
3. 달성군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
4.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파손된 경우

제5조(지원절차 등)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 회의를 거쳐 읍·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·면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.

제6조(관리·운영자의 지정 등) ① 관할 읍·면장은 해당 마을 이장을 관리·운영자로 지정한다.

② 해당 마을 이장에게 관리·운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읍·면장은 마을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마을 주민을 관리·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하며, 그 마을 주민에게 관리·운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·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

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7조(관리·운영비용의 부담)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·운영비용은 해당 마을회가 부담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 1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**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2(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·운영 등)**

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발 의 자 서 명 부

의 원 명	서 명	날 인
김 보 경	김보경	
서 도 원	서도원	
구 자 학	구자학	